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추미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416
----------	-------

발의연월일 : 2026. 4. 17.

발 의 자 : 추미애 · 이수진 · 이성운
정태호 · 한정애 · 박해철
이건태 · 김용민 · 박균택
서영교 · 최혁진 의원
(11인)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당사자가 자신이 주장하는 사실에 대하여 증명책임을 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실제로는 대부분의 경우 소송에 있어 상대적인 강자인 국가, 기업 등에 증거가 집중되어 있기에 그 상대방으로서는 그 주장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기가 매우 곤란한 것이 현실임.

이에 미국의 증거개시제도(discovery 제도) 등의 영향을 받아 문서 제출명령의 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개정이 있었으나,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법원의 소극적 운용 및 불이행에 대한 제재 미흡 등으로 인해 증거의 구조적 편중의 문제는 해결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변론준비절차를 원칙적으로 의무화하고 변론준비절차에서 사건과 관련된 문서 등 자료의 목록 및 증인이 될 수 있는 자의 목록 등이 담긴 증거개시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며, 소송 초기에 변론준

비절차에서 계획적이고 집중적인 ‘초기증거조사’를 통해 집약적인 증거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그 기간 이후 뒤늦게 증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을 주며, 문서제출명령의 요건을 개선하고 불응시의 제재를 강화하고 증언녹취 제도 또한 도입하여, 증거의 구조적 편중을 해결하고 사법정의의 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당사자와 소송관계인이 사실관계를 밝히기 위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협력하도록 함(안 제1조제2항)
- 나. 소액사건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변론준비절차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함(안 제279조).
- 다. 변론준비절차에서 양 쪽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쟁점의 정리, 사건과 관련된 문서 등 자료의 목록 및 증인이 될 수 있는 자의 목록 등이 기재된 증거개시서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279조의2 신설).
- 라. 초기증거조사 계획의 수립 및 확정에 대해 규정함(안 제279조의3 신설).
- 마. 초기증거조사 계획에 포함된 증거신청을 뒤늦게 한 경우에 대한 불이익을 규정함(제285조제5항).
- 바. 문서 등 자료를 가진 사람의 제출의무를 강화함(안 제344조).
- 사. 제출신청의 허가여부에 대한 재판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47조)
- 아. 전자적으로 생성된 문서 등 자료의 제출 형식에 대하여 규정함(제

347조의2 신설).

자. 비밀유지명령 및 그 위반시의 처벌 등에 관해서 규정함(안 제347조의3부터 제347조의6까지 신설).

차. 제출명령에 불응하는 경우의 효과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49조부터 제351조의2까지).

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법원의 결정으로 양쪽 당사자가 진술인을 신문하는 증언녹취 제도를 신설함(안 제373조의2부터 제373조의4까지 신설).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2항 중 “한다”를 “하고, 사실관계를 밝히기 위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협력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58조제1항 단서 중 “부칠 필요가 있는”을 “부치는”으로 한다.

제279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재판장은 소장 부분 송달일로부터 30일 이하의 범위에서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사건을 변론준비절차에 부쳐야 한다. 다만,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액사건인 경우 등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변론준비절차에 부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79조의2 및 제27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9조의2(증거개시서의 제출) ① 당사자는 변론준비절차가 시작된 날로부터 30일 이하의 범위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이하 “증거개시서”라 한다)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액사건인 경우 등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청구 또는 그에 대한 항변에 관한 쟁점의 정리
2. 사건에 관한 주요 사실관계의 정리
3. 당사자가 가지고(점유 및 관리를 포함한다) 있는 사건과 관련된 문서 등 자료의 목록. 이 경우 목록에 포함된 각각의 문서 등 자료의 명칭과 취지가 각각 기재되어야 한다.
4. 사건과 관련하여 증인이 될 수 있는 자의 목록
5. 손해배상 청구가 있는 경우 그 손해액 산정의 근거 및 기초자료의 개요

6. 사건과 관련한 보험 계약이 있는 경우 그 보험계약서 등 자료

② 제347조의3부터 제347조의6까지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증거개시서는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 당사자가 증거개시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불이익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호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1. 패소판결

2.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부담

3. 위반자에 대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제279조의3(초기증거조사의 계획) ① 제279조의2제3항에 따라 증거개

시서를 송달받은 양 쪽 당사자는 송달 완료일로부터 30일 이하의 범위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한 뒤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변론준비절차에서의 집중적인 증거조사(이하 “초기증거조사”라 한다)의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에 대한 의견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액사건인 경우 등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의견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계획을 확정한다. 이 경우 양 쪽 당사자간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사항이 있거나 또는 원활한 증거조사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견과 달리 정할 수 있다.

1. 초기증거조사의 기간. 이 경우 그 시작일로부터 120일 이하의 범위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안으로 하여야 한다.
2. 제3장에 따른 증거 신청의 일정
3. 초기증거조사와 관련한 비용의 부담
4.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280조제1항 중 “그 밖의”를 “증거개시서 그 밖의”로 한다.

제281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를 삭제한다.

이 경우 제279조의3제2항에 따라 확정된 계획에 포함된 증거신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채택하여야 한다.

제284조제1항제1호 중 “6월이”를 “8개월이”로 한다.

제285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당사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계획에 포함된 증거신청을 제279조의3제2항제1호의 기간 이후에 뒤늦게 함으로써 소송의 완결을 지연시키게 하는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각하할 수 있다. 다만, 뒤늦게 신청된 증거가 상대방에게 이익이 되는 등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각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44조의 제목 중 “문서의”를 “문서 등 자료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호의 경우에 문서를 가지고 있는”을 “소송상 증명할 사실과 관련된 문서 등 자료를 가진(점유, 보관 및 관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신청자가 문서를 가지고”를 “문서를 가진 사람 또는 그와 제314조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의 관계에”로, “사람에게 그것을 넘겨 달라고 하거나 보겠다고 요구할 수”를 “사람에 관하여 같은 조에서 규정된 사항이 적혀”로, “사법상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때”를 “문서 등 자료”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서 등 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304조 내지 제306조에 규정된 사항이 적혀있는 문서로서 같은 조문들에 규정된 동의를 받지 아니한 문서
3. 제315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중 어느 하나에 규정된 사항이 적혀 있고 비밀을 지킬 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한 문서 등 자료
4. 공공기관이 가진 문서 등 자료로서 제출 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제34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경우 외에도”를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로,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를 제외한다)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문서를 가지고 있는”을 “등 자료를 가진”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 등 자료를 가진 경우
2. 당사자가 문서 등 자료를 가진 사람에게 열람 또는 송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

제345조의 제목 중 “문서제출신청의”를 “문서 등 자료 제출신청의”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서제출신청에는”을 “문서 등 자료제출신청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 중 “문서의”를 각각 “문서 등 자료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문서를”을 “문서 등 자료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문서 등 자료와 그를 통해 증명할 사실과의 관련성

제346조의 제목 중 “문서목록의”를 “문서 등 자료 목록의”로 하고, 같은 조 중 “문서의”를 “문서 등 자료의”로, “문서로”를 “문서 등 자료로”로, “상대방 당사자에게”를 “상대방에게”로, “가지고 있는”을 “가진”으로, “또는”을 “등 자료 또는”으로, “문서에”를 “문서 등 자료에”로 한다.

제347조제1항 중 “문서제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그”를 “문서 등 자료 제출신청에 따라 당사자 또는 제3자에게 문서 등 자료”로, “수 있다”를 “때에는 그가 문서 등 자료를 가졌는지(점유 및 관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여부와 그 문서 등 자료가 제34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문서가 제344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문서를 가지고 있는”을 “문서 등 자료 제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면 문서 등 자료를 가진”으로, “그 문서를 제시하도록 명할 수 있다”를 “결정으로 제출을 명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그 문서를 다른 사람이 보도록 하여서는 안된다”를 “문서 등 자료의 제출기간을 정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

다.

②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문서 등 자료를 가졌는지 여부 및 제출하지 아니할 면제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상대방, 제3자 또는 이들과 사용관계에 있거나 이들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 등을 신문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나 제3자가 그 문서 등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거나(점유 및 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그에 대한 문서 등 자료 제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 본문에 따른 상대방에 대한 신문절차에는 제2편제3장제6절의 당사자신문에 관한 규정을, 상대방이 아닌 자에 대한 신문절차에는 제2편제3장제2절의 증인신문에 관한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1. 문서 등 자료를 가진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경우

2. 제1항에 따라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문서 등 자료를 가졌는지 여부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지 아니한 경우

3. 상대방, 제3자 또는 이들과 사용관계에 있거나 이들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 등이 제2항 본문에 따른 신문기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4. 제2항 본문에 따른 신문 결과나 그 밖의 자료에 의하여 문서 등 자료를 가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⑤ 법원은 문서 등 자료 제출신청이 문서 등 자료의 일부에 대하여만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 부분만의 제출을 명하여야 한다.

⑥ 법원은 신청대상인 문서 등 자료가 제34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그 문서 등 자료를 제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347조의2부터 제347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7조의2(전자적으로 생성된 문서 등 자료의 제출형식) ① 당사자는

전자적으로 생성된 문서 등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당해 업무에서 합리적으로 생성된 형식으로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제출된 문서 등 자료의 내용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당사자는 상대방의 신청에 의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상대방이 지정한 형식을 준수한 문서 등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3자는 당해 업무에서 합리적으로 생성된 형식으로 전자적으로 생성된 문서 등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제347조의3(비밀유지명령) ① 법원은 제344조, 제347조에 따라 문서

등 자료의 제출의무를 심리하는 과정이나 그 제출명령이 발령된 이후에 문서 등 자료가 공개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소명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당사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당사자를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는 자, 그 밖에 소송수행에 필수적인 자 등 문서 등 자료의 내용을 알게 된 자에게 그 소송의 계속적인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이 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 외의 자에게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이하 “비밀유지명령”이라 한다)의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비밀유지명령을 받을 자

2. 비밀유지명령의 대상이 될 문서 등 자료의 내용을 특정하기에 충분한 사실

3.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

③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 비밀유지명령은 제3항의 결정서가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에게 송달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⑤ 비밀유지명령의 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⑥ 제1항의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사람에서 당사자가 제외되는 경우에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사람은 그 당사자에게도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제347조의4(비밀유지명령의 취소) ①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 없는 경우에는 비밀유지명령을 한 법원)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제347조의3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비밀유지명령을 결정으로 취소할 수 있다.

- ② 법원은 제1항의 결정을 위하여 당사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③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의 취소에 대한 재판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그 취소신청을 한 자 및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⑤ 비밀유지명령을 취소하는 재판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 ⑥ 비밀유지명령을 취소하는 재판을 한 법원은 제3항에 따라 결정서의 송달을 받을 자 외에 해당 문서 등 자료에 관한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도 즉시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재판을 한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347조의5(비밀유지명령에 따른 변론의 비공개, 열람제한 등) ①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의 대상이 된 문서 등 자료의 내용을 심리하는 변론 등은 비공개로 하여야 한다.

- ②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 이외의 사람은 비밀유지명령의 대상이 된 문서 등 자료의 내용이 기재된 부분의 소송기록, 재판서·조서의 정본·등본·초본의 교부를 신청할 수 없다.
- ③ 법원은 대법원규칙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재판서에 비밀유지명령의 대상이 된 문서 등 자료의 내용에 관한 구체적 기재를 생략하거나 비밀유지명령의 대상이 된 문서 등 자료의 내용이 기재된 재판서에 대한 열람 또는 정본·등본·초본이 교부되지 아니하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④ 법원과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는 비밀유지명령의 대상이 된 문

서 등 자료의 내용이 포함된 서류의 제출, 송달 또는 보관 등에 있어서 대법원규칙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비밀을 유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47조의6(비밀유지명령 위반죄)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제347조의3에 따른 비밀유지 명령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는 문서 등 자료를 제출한 사람(당사자에게 문서 등 자료의 점유·보관·관리를 위탁받은 제3자가 문서 등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점유·보관·관리를 위탁한 당사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348조 중 “문서제출의”를 “문서 등 자료제출의”로 한다.

제349조의 제목 중 “문서를”을 “문서 등 자료를”로 하고, 같은 조 중 “제347조제1항·제2항”을 “제346조”로, “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47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로, “문서의 기재에 대한”을 “직권 또는”으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을 “신청에 따라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불이익 제재를 부과할”로 하며, 같은 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5호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1. 문서 등 자료의 기재에 대한 문서 등 자료의 제출을 신청한 당사자의 주장의 진실한 것으로의 인정
2. 문서 등 자료의 제출을 신청한 당사자에게 문서 등 자료의 기재

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고 그 문서 등 자료로 증명할 사실을 다른 증거로 증명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소명되는 경우 증명할 사실에 관한 그 당사자의 주장의 진실한 것으로의 인정

3. 패소판결

4.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부담

5. 위반자에 대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제35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당사자가 상대방의 사용을 방해할 목적으로 제출의 무가 있는 문서를 훼손하여 버리거나”를 “자신에 대한 소가 제기되었거나 장래에 제기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그 당사자는 그와 관련된 문서 등 자료를 훼손·은닉하거나”로, “한 때에는, 법원은 그 문서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당사자가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제349조를 준용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당해 문서 등 자료를 삭제할 의무가 있거나 전산 시스템의 일상적 운용 중 문서 등 자료의 삭제가 이루어지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1조의 제목 중 “문서를”을 “문서 등 자료를”로, “때의”를 “경우의”로 하고, 같은 조 중 “제347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의”를 “제347조제4

항부터 제6항까지의”로, “아니한 때에는 제318조의 규정을”을 “아니하거나 제출명령의 대상이 된 문서 등 자료를 삭제한 경우에는 제318조를”로 한다.

제35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1조의2(문서 등 자료제출명령을 위반한 증거신청의 각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당사자가 그 문서 등 자료 목록이나 문서 등 자료를 뒤늦게 증거로 신청하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각하한다. 다만, 뒤늦게 신청된 증거가 상대방에게 이익이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각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346조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문서 등 자료 목록을 제출할 경우
2. 제347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문서 등 자료를 제출할 경우

제2편 제3장에 제6절의2(제373조의2부터 제373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절의2 증언녹취

제373조의2(당사자에 의한 신문 등) ①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양 쪽 당사자로 하여금 소송상 공격 또는 방어방법과 관

련된 사실이나 자료의 검증에 필요한 사람(당사자를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진술인의 수, 범위, 방법 및 장소를 정하여 상호간에 신문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상대방에게 과도한 부담을 야기하는지 여부
2. 자료나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의 검증 또는 자료의 보전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인지 여부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신문과 관련하여 진술인의 수, 범위, 방법 및 장소 등을 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변론준비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제1항에 따라 양 쪽 당사자로 하여금 신문을 하게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에게 진술인의 진술을 녹음장치 또는 영상녹화장치를 사용하여 녹음 또는 영상녹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
2. 「공증인법」 제1조의2제1호에 따른 공증인
3.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제1항의 신문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한 사람

④ 법원사무관등은 진술인에게 제1항에 따른 신문에 앞서 선서를 하게 하여야 하고, 선서에 앞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신문한 뒤에 선서를 하게 할 수 있다.

1. 사건번호 및 사건명
2. 법원사무관등의 성명
3. 선서의 의무 및 취지
4. 다음 사항에 대한 경고

가. 당사자가 진술인인 경우(법정대리인이 진술인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거짓 진술에 대한 제재

나.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진술인인 경우에는 위증의 벌

5. 그 밖에 법관이 제1항의 신문에 관하여 고지가 필요하다고 인정
한 사항

⑤ 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에 따른 신문이 완료된 후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면인 진술절차요약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건의 표시
2. 법원사무관등의 성명
3. 출석한 당사자·대리인·통역인과 출석하지 아니한 당사자의 성명
4. 신문기일 및 장소
5. 진술인의 인적사항
6. 신문의 내용, 방법 및 절차에 관한 당사자의 이의 요지
7. 진술거부 및 선서거부가 있었다면 그 내용 요지
8. 선서를 시키지 아니하고 당사자가 아닌 진술인을 신문한 경우 그
요지

9. 그 밖에 신문의 진행경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⑥ 제1항에 따른 신문의 진행 중 신문의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이의내용을 명확히 진술하는 방법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법원사무관등은 그 이의 요지를 진술절차요약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⑦ 상대방이 상당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진술인 또는 당사자를 괴롭히거나 진술을 강요하는 때에는 진술인 또는 당사자는 법원에 신문절차의 종료 또는 중단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신문은 중단된다.

⑧ 양 쪽 당사자는 제3항에 따라 녹음 또는 영상녹화된 진술인에 대한 신문 내용 중 필요한 부분을 특정하여 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과 이에 대한 녹취서를 증거로 제출할 수 있다.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신문 내용 전체를 기록한 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과 이에 대한 녹취서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⑨ 양 쪽 당사자 중 일방이 제1항에 따른 신문절차를 방해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

1. 진술인이 진술할 내용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의 진실한 것으로의 인정
2. 진술인이 진술할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고 진술인으로 증명할 사실을 다른 증거로 증명하는 것

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소명되는 경우 증명할 사실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의 진실한 것으로 인정

3. 패소판결

4. 소송비용 전부 또는 일부의 부담

5.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⑩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자가 아닌 진술인을 제1항에 따라 신문하는 경우에는 제303조부터 제309조까지, 제311조, 제312조, 제314조, 제315조, 제321조부터 제324조까지, 제327조제1항, 제327조의2 및 제328조를, 당사자인 진술인을 제1항에 따라 신문하는 경우에는 제309조, 제321조, 제322조, 제327조제1항, 제327조의2, 제369조 및 제370조를 준용한다.

⑪ 당사자가 아닌 진술인이 진술거부 또는 선서거부를 하는 경우 진술인은 거부하는 이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사자는 법원에 진술거부 또는 선서거부에 관한 재판을 신청할 수 있고, 위 재판에 관하여는 제317조 및 제318조를 준용한다.

⑫ 제4항에 의하여 선서한 당사자 아닌 진술인은 「형법」 제152조, 제153조 및 제155조의 적용을 받는 증인으로 본다.

⑬ 제1항에 따른 신문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373조의3(변호사 선임명령) ① 법원은 제373조의2제1항에 따른 신문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당사자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그 당사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법원은 당사자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고도 정해진 기간 내에 변호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제373조의2제1항에 따른 신문을 허용하는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제373조의2제1항에 따른 신청의 상대방이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제373조의2제1항에 따른 신문이 실시되지 못한 경우 제373조의2제9항에 따른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

제373조의4(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373조의2제3항에 따라 진술인의 진술을 녹음 또는 영상녹화하는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소가 제기된 사건의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1조(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 ① (생략)</p> <p>② 당사자와 소송관계인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하여야 한다.</p>	<p>제1조(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하고, 사실관계를 밝히기 위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협력하여야 한다.</p>
<p>제258조(변론기일의 지정) ① 재판장은 제25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변론 없이 판결하는 경우 외에는 바로 변론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건을 변론준비절차에 <u>부칠 필요가 있는</u>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생략)</p>	<p>제258조(변론기일의 지정) ① --- ----- ----- ----- ----- -----부치는-----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279조(변론준비절차의 실시) <신설></p>	<p>제279조(변론준비절차의 실시) ① 재판장은 소장 부분 송달일로부터 30일 이하의 범위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사건을 변론준비절차에 부쳐야 한다. 다만,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소</p>

① · ② (생략)

<신설>

액사건인 경우 등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변론준비절차에 부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 ③ (현행 제1항 및 제2항과 같음)

제279조의2(증거개시서의 제출)

① 당사자는 변론준비절차가 시작된 날로부터 30일 이하의 범위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이하 “증거개시서”라 한다)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액사건인 경우 등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청구 또는 그에 대한 항변에 관한 쟁점의 정리
2. 사건에 관한 주요 사실관계의 정리
3. 당사자가 가지고(점유 및 관리를 포함한다) 있는 사건과 관련된 문서 등 자료의 목록. 이 경우 목록에 포함된 각각

의 문서 등 자료의 명칭과 취
지가 각각 기재되어야 한다.

4. 사건과 관련하여 증인이 될
수 있는 자의 목록

5. 손해배상 청구가 있는 경우
그 손해액 산정의 근거 및 기
초자료의 개요

6. 사건과 관련한 보험 계약이
있는 경우 그 보험계약서 등
자료

② 제347조의3부터 제347조의6
까지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증거개시서는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 당사자가 증거개시서를 제
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
라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불이익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호의 결정에 대하
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1. 패소판결

2.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의 부담

3. 위반자에 대한 500만원 이하

<신 설>

의 과태료 부과

제279조의3(초기증거조사의 계획)

① 제279조의2제3항에 따라 증거개시서를 송달받은 양 쪽 당사자는 송달 완료일로부터 30일 이하의 범위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한 뒤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변론준비절차에서의 집중적인 증거조사(이하 “초기증거조사”라 한다)의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에 대한 의견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액사건인 경우 등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의견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계획을 확정한다. 이 경우 양 쪽 당사자 간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사항이 있거나 또는 원활한 증거조사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견과 달리 정할 수 있다.

1. 초기증거조사의 기간. 이 경우 그 시작일로부터 120일 이하의 범위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안으로 하여야 한다.

2. 제3장에 따른 증거 신청의 일정

3. 초기증거조사와 관련한 비용의 부담

4.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280조(변론준비절차의 진행) ① 변론준비절차는 기간을 정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준비서면, 그 밖의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당사자 사이에 이를 교환하게 하고 주장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신청하게 하는 방법으로 진행한다.

② ~ ④ (생략)

제281조(변론준비절차에서의 증거조사) ① 변론준비절차를 진행하는 재판장, 수명법관, 제280조제4항의 판사(이하 “재판장

제280조(변론준비절차의 진행) ①

증거개시서 그 밖의-----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81조(변론준비절차에서의 증거조사) ① -----

제285조(변론준비기일을 종결한
효과) ① ~ ③ (생략)
<신설>

제344조(문서의 제출의무) ① 다
음 각호의 경우에 문서를 가지
고 있는 사람은 그 제출을 거
부하지 못한다. <단서 신설>

1. 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를 가지고 있는 때

제285조(변론준비기일을 종결한
효과) ① ~ ③ (현행과 같음)
⑤ 당사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계획에 포함된 증거신
청을 제279조의3제2항제1호의
기간 이후에 뒤늦게 함으로써
소송의 완결을 지연시키게 하
는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법원
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각하할 수
있다. 다만, 뒤늦게 신청된 증
거가 상대방에게 이익이 되는
등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특
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각
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44조(문서 등 자료의 제출의
무) ① 소송상 증명할 사실과
관련된 문서 등 자료를 가진
(점유, 보관 및 관리를 포함한
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문서 등 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304조 내지 제306조에 규
정된 사항이 적혀있는 문서로

2. 신청자가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것을 넘겨 달라고 하거나 보겠다고 요구할 수 있는 사법상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때

3. 문서가 신청자의 이익을 위하여 작성되었거나, 신청자와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작성된 것인 때. 다만, 다음 각목의 사유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제304조 내지 제306조에 규정된 사항이 적혀있는 문서로서 같은 조문들에 규정된 동의를 받지 아니한 문서

나. 문서를 가진 사람 또는 그와 제314조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관하여 같은 조에서 규정된 사항이 적혀 있

서 같은 조문들에 규정된 동의를 받지 아니한 문서

2. 문서를 가진 사람 또는 그와 제314조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의 관계에-----사람에 관하여 같은 조에서 규정된 사항이 적혀-----문서 등 자료

3. 제315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중 어느 하나에 규정된 사항이 적혀 있고 비밀을 지킬 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한 문서 등 자료

는 문서

다. 제315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중 어느 하나에 규정된 사항이 적혀 있고 비밀을 지킬 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한 문서

<신 설>

② 제1항의 경우 외에도 문서(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를 제외한다)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제출을 거부하지 못한다.

1. 제1항제3호 나목 및 다목에 규정된 문서

2. 오로지 문서를 가진 사람이 이용하기 위한 문서

제345조(문서제출신청의 방식) 문

4. 공공기관이 가진 문서 등 자료로서 제출 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등 자료를 가진-----
-----.

1. 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 등 자료를 가진 경우

2. 당사자가 문서 등 자료를 가진 사람에게 열람 또는 송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

제345조(문서 등 자료 제출신청

서제출신청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밝혀야 한다.

1. 문서의 표시
2. 문서의 취지
3. 문서를 가진 사람
4. (생략)
5. 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의무의 원인

제346조(문서목록의 제출) 제345조의 신청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신청대상이 되는 문서의 취지나 그 문서로 증명할 사실을 개괄적으로 표시한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상대방 당사자에게 신청내용과 관련하여 가지고 있는 문서 또는 신청내용과 관련하여 서증으로 제출할 문서에 관하여 그 표시와 취지 등을 적어 내도록 명할 수 있다.

제347조(제출신청의 허가여부에 대한 재판) ① 법원은 문서제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 문

의 방식) 문서 등 자료제출신청에는-----

1. 문서 등 자료의-----
2. 문서 등 자료의-----
3. 문서 등 자료를-----
4. (현행과 같음)
5. 문서 등 자료와 그를 통해 증명할 사실과의 관련성

제346조(문서 등 자료 목록의 제출) -----

-----문서 등 자료의-----문서 등 자료로-----
-----상대방에게-----
-----가지-----등 자료-----
또는-----
-----문서 등 자료에-----
-----.

제347조(제출신청의 허가여부에 대한 재판) ① -----문서 등 자료 제출신청에 따라 당사자 또는 제3자에게 문서 등 자료-

서를 가진 사람에게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 문서제출의 신청이 문서의 일부에 대하여만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부분만의 제출을 명하여야 한다.

③ 제3자에 대하여 문서의 제출을 명하는 경우에는 제3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를 심문

-----때에는 그가 문서 등 자료를 가졌는지(점유 및 관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여부와 그 문서 등 자료가 제34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문서 등 자료를 가졌는지 여부 및 제출하지 아니할 면제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상대방, 제3자 또는 이들과 사용관계에 있거나 이들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 등을 신문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나 제3자가 그 문서 등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거나(점유 및 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그에 대한 문서 등 자료 제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 본문에 따른 상대방에 대한 신문절차에는 제2편제3장제6절의 당사자신문에 관한

하여야 한다.

④ 법원은 문서가 제344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문서를 제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문서
를 다른 사람이 보도록 하여서
는 안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규정을, 상대방이 아닌 자에 대
한 신문절차에는 제2편 제3장 제
2절의 증인신문에 관한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④ -----문서 등 자료 제출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고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한다고 인정하면 문서 등 자료
를 가진-----결정으로 제
출을 명하여야 한다. -----
-----문서 등 자료의 제출기
간을 정할 수 있다.

1. 문서 등 자료를 가진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경우

2. 제1항에 따라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문서 등 자료를 가
졌는지 여부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지 아니한 경우

3. 상대방, 제3자 또는 이들과
사용관계에 있거나 이들을 위
하여 일하는 사람 등이 제2항
본문에 따른 신문기일에 정당
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
한 경우

4. 제2항 본문에 따른 신문 결
과나 그 밖의 자료에 의하여

<신 설>

<신 설>

<신 설>

문서 등 자료를 가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⑤ 법원은 문서 등 자료 제출 신청이 문서 등 자료의 일부에 대하여만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 부분만의 제출을 명하여야 한다.

⑥ 법원은 신청대상인 문서 등 자료가 제34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그 문서 등 자료를 제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347조의2(전자적으로 생성된 문서 등 자료의 제출형식) ① 당사자는 전자적으로 생성된 문서 등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당해 업무에서 합리적으로 생성된 형식으로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제출된 문서 등 자료의 내용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당사자는 상대방의 신청에 의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상대방이 지정한 형식을 준수한 문서 등 자료를 제출하

<신 설>

여야 한다.

② 제3자는 당해 업무에서 합리적으로 생성된 형식으로 전자적으로 생성된 문서 등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제347조의3(비밀유지명령) ① 법원은 제344조, 제347조에 따라 문서 등 자료의 제출의무를 심리하는 과정이나 그 제출명령이 발령된 이후에 문서 등 자료가 공개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소명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당사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당사자를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는 자, 그 밖에 소송수행에 필수적인 자 등 문서 등 자료의 내용을 알게 된 자에게 그 소송의 계속적인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이 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 외의 자에게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이하 “비밀유지명령”이라 한다)의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비밀유지명령을 받을 자
2. 비밀유지명령의 대상이 될 문서 등 자료의 내용을 특정하기에 충분한 사실
3.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

③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 비밀유지명령은 제3항의 결정서가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에게 송달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⑤ 비밀유지명령의 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⑥ 제1항의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사람에서 당사자가 제외되는 경우에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사람은 그 당사자에게도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신 설>

제347조의4(비밀유지명령의 취소)

①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 없는 경우에는 비밀유지명령을 한 법원)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제347조의3 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비밀유지명령을 결정으로 취소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제1항의 결정을 위하여 당사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의 취소에 대한 재판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그 취소신청을 한 자 및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⑤ 비밀유지명령을 취소하는 재판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⑥ 비밀유지명령을 취소하는 재판을 한 법원은 제3항에 따라 결정서의 송달을 받을 자

<신 설>

외에 해당 문서 등 자료에 관한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도 즉시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재판을 한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347조의5(비밀유지명령에 따른 변론의 비공개, 열람제한 등)

①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의 대상이 된 문서 등 자료의 내용을 심리하는 변론 등은 비공개로 하여야 한다.

②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 이외의 사람은 비밀유지명령의 대상이 된 문서 등 자료의 내용이 기재된 부분의 소송기록, 재판서·조서의 정본·등본·초본의 교부를 신청할 수 없다.

③ 법원은 대법원규칙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재판서에 비밀유지명령의 대상이 된 문서 등 자료의 내용에 관한 구체적 기재를 생략하거나 비밀유지명령의 대상이 된 문서 등 자료의 내용이 기재된 재판서에 대한 열람 또는 정본·등본·초본이 교부되지 아니하도록 조치를

<신 설>

제348조(불복신청) 문서제출의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취할 수 있다.

④ 법원과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는 비밀유지명령의 대상이 된 문서 등 자료의 내용이 포함된 서류의 제출, 송달 또는 보관 등에 있어서 대법원규칙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비밀을 유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47조의6(비밀유지명령 위반죄)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제347조의3에 따른 비밀유지 명령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는 문서 등 자료를 제출한 사람(당사자에게 문서 등 자료의 점유·보관·관리를 위탁받은 제3자가 문서 등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점유·보관·관리를 위탁한 당사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348조(불복신청) 문서 등 자료 제출의-----
-----.

제349조(당사자가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의 효과) 당사자가 제347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문서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후단 신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제349조(당사자가 문서 등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의 효과) -----제346조-----제347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직권 또는-----신청에 따라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불이익 제재를 부과할-----
-----. 이 경우 제5호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1. 문서 등 자료의 기재에 대한 문서 등 자료의 제출을 신청한 당사자의 주장의 진실한 것으로의 인정
2. 문서 등 자료의 제출을 신청한 당사자에게 문서 등 자료의 기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고 그 문서 등 자료로 증명할 사실을 다른 증거로 증명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소명되는 경우 증명할 사실에 관한 그 당사자의 주장의 진실한 것으로의 인정
3. 패소판결

<신 설>

<신 설>

제350조(당사자가 사용을 방해한 때의 효과) 당사자가 상대방의 사용을 방해할 목적으로 제출 의무가 있는 문서를 훼손하여 버리거나 이를 사용할 수 없게 한 때에는, 법원은 그 문서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신 설>

제351조(제3자가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의 제재) 제3자가 제347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제318조의 규정

4.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부담

5. 위반자에 대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제350조(당사자가 사용을 방해한 때의 효과) ① 자신에 대한 소가 제기되었거나 장래에 제기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그 당사자는 그와 관련된 문서 등 자료를 훼손·은닉하거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당사자가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제349조를 준용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당해 문서 등 자료를 삭제할 의무가 있거나 전산시스템의 일상적 운용 중 문서 등 자료의 삭제가 이루어지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1조(제3자가 문서 등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제재) -----제347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아니하거나 제출명령의

을 준용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대상이 된 문서 등 자료를 삭제한 경우에는 제318조를-----

-----.

제351조의2(문서 등 자료제출명령을 위반한 증거신청의 각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당사자가 그 문서 등 자료 목록이나 문서 등 자료를 뒤늦게 증거로 신청하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각하한다. 다만, 뒤늦게 신청된 증거가 상대방에게 이익이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각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346조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문서 등 자료 목록을 제출할 경우

2. 제347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문서 등 자료를 제출할 경우

제6절의2 증언녹취

제373조의2(당사자에 의한 신문 등) ①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에 의한 결정으로 양 쪽 당사자로 하여금 소송상 공격 또는 방어방법과 관련된 사실이나 자료의 검증에 필요한 사람(당사자를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진술인의 수, 범위, 방법 및 장소를 정하여 상호간에 신문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상대방에게 과도한 부담을 야기하는지 여부

2. 자료나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의 검증 또는 자료의 보전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인지 여부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신문과 관련하여 진술인의 수, 범위, 방법 및 장소 등을 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변론준비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제1항에 따라 양 쪽 당사자로 하여금 신문을 하게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법원사무관등”이라 한

다)에게 진술인의 진술을 녹음 장치 또는 영상녹화장치를 사용하여 녹음 또는 영상녹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

2. 「공증인법」 제1조의2제1호에 따른 공증인

3.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제1항의 신문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한 사람

④ 법원사무관등은 진술인에게 제1항에 따른 신문에 앞서 선서를 하게 하여야 하고, 선서에 앞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신문한 뒤에 선서를 하게 할 수 있다.

1. 사건번호 및 사건명

2. 법원사무관등의 성명

3. 선서의 의무 및 취지

4. 다음 사항에 대한 경고

가. 당사자가 진술인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진술인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에는 거짓 진술에 대한
제재

나.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진술인인 경우에는 위증의
벌

5. 그 밖에 법관이 제1항의 신
문에 관하여 고지가 필요하
다고 인정한 사항

⑤ 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에 따
른 신문이 완료된 후 지체 없
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
된 서면인 진술절차요약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건의 표시

2. 법원사무관등의 성명

3. 출석한 당사자·대리인·통
역인과 출석하지 아니한 당
사자의 성명

4. 신문기일 및 장소

5. 진술인의 인적사항

6. 신문의 내용, 방법 및 절차
에 관한 당사자의 이의 요지

7. 진술거부 및 선서거부가 있
었다면 그 내용 요지

8. 선서를 시키지 아니하고 당사자가 아닌 진술인을 신문한 경우 그 요지

9. 그 밖에 신문의 진행경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⑥ 제1항에 따른 신문의 진행 중 신문의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이의내용을 명확히 진술하는 방법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법원사무관등은 그 이의 요지를 진술절차요약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⑦ 상대방이 상당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진술인 또는 당사자를 괴롭히거나 진술을 강요하는 때에는 진술인 또는 당사자는 법원에 신문절차의 종료 또는 중단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신문은 중단된다.

⑧ 양 쪽 당사자는 제3항에 따라 녹음 또는 영상녹화된 진술인에 대한 신문 내용 중 필요한 부분을 특정하여 녹음물 또

는 영상녹화물과 이에 대한 녹취서를 증거로 제출할 수 있다.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신문 내용 전체를 기록한 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과 이에 대한 녹취서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⑨ 양 쪽 당사자 중 일방이 제 1항에 따른 신문절차를 방해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

1. 진술인이 진술할 내용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의 진실한 것으로의 인정

2. 진술인이 진술할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고 진술인으로 증명할 사실을 다른 증거로 증명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소명되는 경우 증명할 사실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의 진실한 것으로의 인정

3. 패소판결

4. 소송비용 전부 또는 일부의 부담

5.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⑩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자가 아닌 진술인을 제1항에 따라 신문하는 경우에는 제303조부터 제309조까지, 제311조, 제312조, 제314조, 제315조, 제321조부터 제324조까지, 제327조제1항, 제327조의2 및 제328조를, 당사자인 진술인을 제1항에 따라 신문하는 경우에는 제309조, 제321조, 제322조, 제327조제1항, 제327조의2, 제369조 및 제370조를 준용한다.

⑪ 당사자가 아닌 진술인이 진술거부 또는 선서거부를 하는 경우 진술인은 거부하는 이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사자는 법원에 진술거부 또는 선서거부에 관한 재판을 신청할 수 있고, 위 재판에 관하여는 제317조 및 제318조를 준용한다.

⑫ 제4항에 의하여 선서한 당

<신 설>

사자 아닌 진술인은 「형법」 제152조, 제153조 및 제155조의 적용을 받는 증인으로 본다.

⑬ 제1항에 따른 신문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373조의3(변호사 선임명령) ①

법원은 제373조의2제1항에 따른 신문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당사자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그 당사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법원은 당사자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고도 정해진 기간 내에 변호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제373조의2제1항에 따른 신문을 허용하는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제373조의2제1항에 따른 신청의 상대방이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제373조의2제1항에 따른 신문이 실시되지 못한 경우 제373

<신 설>

조의2제9항에 따른 제재를 부
과할 수 있다.

제373조의4(벌칙 적용에서의 공
무원 의제) 제373조의2제3항에
따라 진술인의 진술을 녹음 또
는 영상녹화하는 사람 중 공무
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
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
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